## KOSHA GUIDE

C - 86 - 2018

- (16)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안전검사)와 관련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것을 확인하고 안전검사를 합격한 기계기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17)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서류의 보존)에 의하여 안전보건관리문서를 보존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안전 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금 향후 유사 건설공사의 안전보건관리에 유용한 정보제공을 위해 해당 건설공사가 준공되면 건설현장에서 작성된 안전보건 관리문서를 본사에 제출·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가) 산업재해 발생시 관련서류
  - 사고조사보고서, 요양신청서, 재해분석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서류
- (나) 관리감독자 지정, 직무수행일지 및 교육실시 관련자료
  - 관리감독자 교육일지, 안전보건일지 등
- (다)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관련서류
  - 신규채용자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작업내용 변경시교육
- (라) 유해위험 기계기구에 대한 안전조치 관련서류
  - 작업장 내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안전장치설치여부
  - 끼임 등의 설비에 대한 안전덮개
  - 떨어짐 위험장소에 대한 떨어짐 방지조치
  - 폭발 등 위험장소에 대한 안전조치 등
- (마)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안전검사 실시여부(검사필증 등)
- (바) 작업환경측정 대상사업장의 경우 작업환경 측정결과서류 및 예방계획 자료 등
- (사)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경고표지 부착여부
- (아) 중량물취급 작업에 따른 작업계획서 작성여부
- (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내역

## 6. 사고처리 및 응급조치

(1)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금 당해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보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본사에 보고 하여 긴급조치 및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